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27호(號) 1934(昭和 9)년 10월 11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08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68호(일본·만주 국제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[日滿國際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10월 1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5조(條), 제16조(條), 제19조(條), 제34조(條) 및 제51조(條) 중(中) 「치치하얼(齊齊哈爾)」을 「양양계(昂昂溪)」로 개정(改正)함.